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

[시행 2023.09.13] (일부개정) 2023.09.13 조례 제3131호

> 관리책임부서명: 경제산업국 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: 031-580-2515

제6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개정 2021.4.12.><개정 2023.9.13.>

- 1. 전액 감면
- 가. 국빈 및 그 수행원
- 나.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
- 다.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
- 라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마.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
- 바. 군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<신설 2021.8.4.><개정 2023.9.13.>
- 사.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<신설 2021.8.4.><개정 2023.9.13.>
- 2. 100분의 50 감면
- 가.「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유효기간에 한정함)
- 나.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, 클럽하우스 숙소·세미나실·다목적강당·다목적운동장<개정 2023.9.13.>
- 다. 「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<신설 2022.10.12.>
- 3. 100분의 30 감면
- 가. 가평군민(「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」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포함) 및「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. 다만, 성수기는 제외한다.<개정 2023.2.13.>
- 나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다. 「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,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<개정 2021.8.4.> <개정 2023.9.13.>
- 라. 군에 있는 부대 장병
- 마.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 체류자가 사용하는 경우
- 바.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박 6일간 체류하는 경우(성수기는 제외)<개정 2023.9.13.>
- ② 군수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.<개정 2021.4.12.><개정 2023.9.13.>